

1. 개정이유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외교부의 인력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을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하고, 외교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376호, 2023. 4. 5.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재외국민보호과·해외안전상황실 및 여권과를 둔다.

③ 영사안전정책과장 및 여권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재외국민보호과장 및 해외안전상황실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사 관련 정책·지침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4.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6. 재외국민보호 법령·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행 및 총괄

• 조정

7. 국외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8.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사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⑤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사건·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
 3. 국외사건·사고 사례 분석
 4. 영사협력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범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 ⑥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 모니터링
 2. 국외사건·사고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
의훈련
 4.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영사콜센터의 운영

7.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8. 당직업무 관리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여권 관계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972”를 “944”로 하고, 일반직 계 “241”을 “23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8”을 “15”로,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5”를 “3”으로, 행정서기보 “31”을 “2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을 “5”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23”을 “70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44”를 “42”로, 9등급 외무공무원 “9”를 “10”으로, 8등급 외무공무원 “69”를 “66”으로, 7등급 외무공무원 “19”를 “18”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2”를 “160”으로,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8”을 “17”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1”을 “29”로,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23”을 “117”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

원 또는 행정주사·운전주사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74”를 “9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1”을 “23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8”을 “15”로,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5”를 “3”으로, 행정서기보 “31”을 “2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을 “5”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25”를 “70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44”를 “42”로, 9등급 외무공무원 “9”를 “10”으로, 8등급 외무공무원 “69”를 “66”으로, 7등급 외무공무원 “19”를 “18”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2”를 “160”으로,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8”을 “17”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3”을 “31”로,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23”을 “117”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운전주사 “17”을 “1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외교조정관·재외동포영사실장”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0조의2(재외동포영사실) ① 재외동포영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u>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영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해외안전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③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u>④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11호부터 제17호</u>	<u>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②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 · 재외국민보호과 · 해외안전상황실 및 여권과를 둔다.</u> <u>③ 영사안전정책과장 및 여권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재외국민보호과장 및 해외안전상황실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u> <u>④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영사 관련 정책 · 지침의 수립 · 총괄 및 조정</u> <u>2.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u> <u>3.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u> <u>4.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외동포영사실에 재외동포
과, 영사서비스과, 여권과, 재외
국민보호과, 재외국민안전과 및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둔다.

⑥ 재외동포과장·영사서비스
과장·재외국민보호과장·재외
국민안전과장 및 해외안전지킴
센터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여권과장은 외
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
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⑦ 재외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재외동포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재외동포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실무자간 협의체의 운영
등 동포업무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 및 재
외동포·동포단체에 대한 지

5.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
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6. 재외국민보호 법령·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
행 및 총괄·조정

7. 국외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8.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사 보
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
항

⑤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외사건·사고와 관련한 재
외국민 보호 업무
2.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
3. 국외사건·사고 사례 분석
4. 영사협력원의 위촉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원

5.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 ·

감독

6. 재외동포에 대한 포상 및 보

훈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사항

8. 국외 소재 한인 유산의 관리

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9. 세계 한인의 날 관련 업무

10.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영사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영사 관련 정책 · 지침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2. 영사 관련 법령 · 제도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3.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이행

4. 영사서비스 개선

5.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이행

6. 재외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

계등록 관련 사항

7. 영사 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

· 확인 및 인증

5.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도에 관한 사항

⑥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

· 사고 모니터링

2. 국외사건 · 사고의 접수 · 전

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

한 사항

3.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

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4.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

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6. 영사콜센터의 운영

7.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8. 당직업무 관리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여권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여권 관계 법령 · 제도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 · 외교관여권 및 관

8.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사항

9. 체류 외국인의 영사보호에 관한 사항

10.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사항

11.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등록 및 관리, 해외 이주에 관한 사항

⑨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여권 관계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외교관여권 및 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⑩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령 ·

제도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3. 국외사건 · 사고와 관련한 재

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 · 조
정

4.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조 업무

5. 여행경보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외사건 · 사고 예방 및 홍

보에 관한 사항

⑪ 재외국민안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천재지변 · 전쟁 · 내란 · 폭동

· 테러 · 대형 사건사고 등 국
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
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 · 조정

2.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

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3.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국

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
력

4. 국외 위난상황 사례분석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
호 업무의 총괄·조정

6. 영사협력원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에 관
한 사항

⑫ 해외안전지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안전지킴센터 업무에 관
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
정

2. 국외사건·사고 및 국외 위
난상황의 접수, 전파, 상황판
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국외사건·사고 및 국외 위
난상황 모니터링

4. 국외사건·사고 및 국외 위
난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

5.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
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영사콜센터의 운영

<u>8.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u> <u>9. 당직업무 관리</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72</u>	<u>944</u>	-28
·	·	·	
·	·	·	
일반직 계	<u>241</u>	<u>230</u>	-11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 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u>18</u>	<u>15</u>	-3
·	·	·	
·	·	·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u>5</u>	<u>3</u>	-2
·	·	·	
·	·	·	
행정서기보	<u>31</u>	<u>26</u>	-5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6</u>	<u>5</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23</u>	<u>706</u>	-17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 공무원	<u>44</u>	<u>42</u>	-2
.	.	.	
9등급 외무공무원	<u>9</u>	<u>10</u>	+1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9</u>	<u>66</u>	-3
.	.	.	
7등급 외무공무원	<u>19</u>	<u>18</u>	-1
.	.	.	
.	.	.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 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62</u>	<u>160</u>	-2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 기술직공무원	<u>18</u>	<u>17</u>	-1
.	.	.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31</u>	<u>29</u>	-2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u>123</u>	<u>117</u>	-6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운전주사	<u>17</u>	<u>16</u>	-1
·	·	·	
·	·	·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74</u>	<u>946</u>	-28
·	·	·	
·	·	·	
일반직 계	<u>241</u>	<u>230</u>	-11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 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u>18</u>	<u>15</u>	-3
·	·	·	
·	·	·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 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 4등급 영사직공무원	<u>5</u>	<u>3</u>	-2
·	·	·	
·	·	·	
행정서기보	<u>31</u>	<u>26</u>	-5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6</u>	<u>5</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25</u>	<u>708</u>	-17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 공무원	<u>44</u>	<u>42</u>	-2
.	.	.	
9등급 외무공무원	<u>9</u>	<u>10</u>	+1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9</u>	<u>66</u>	-3
.	.	.	
7등급 외무공무원	<u>19</u>	<u>18</u>	-1
.	.	.	
.	.	.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 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62</u>	<u>160</u>	-2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 기술직공무원	<u>18</u>	<u>17</u>	-1
.	.	.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33</u>	<u>31</u>	-2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u>123</u>	<u>117</u>	-6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u>17</u>	<u>16</u>	-1
·	·	·	
·	·	·	